

대전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가합722 판결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270,000,000에 대하여는 2013. 11. 14.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합의서(이하 ‘이 사건 차용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을(피고 B)이 논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350,000,000 원을 요청하여 갑(원고)이 이 금액을 대여해 줄 것을 승낙한다. 을은 월 3%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2014. 3.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2. 을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토지가 구입되면 토지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등기한다.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므로 법인은 을과 연대책임으로 갑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3. 이에 갑이 대여해준 돈의 안전을 위해 을이 법인을 만들 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갑이 추천한 자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차용금이 모두 해결될 때는 갑이 추천한 대표이사는 즉시 사임하고 을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4.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건축 사업을 한다. 하지만 갑이 갑의 채권에 대해 위험이 염려된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할 경우는 즉시 중단하고 갑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이후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 B은 2013. 10. 8. E(개명 전 F)과 발기인이 되어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E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 주인데, 피고 B과 E이 각 1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1. 피고 B과 “일금 팔천만 원 2013. 10. 11.에 차용하고 2014. 3. 10.까지 변제하겠음. 차용인 B, 주식회사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4. 피고 B와 “일금 이억칠천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하고 2014. 3. 10.까지 변제하기로 함. 차용인 B, 주식회사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차용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합계 350,000,000원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G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합의서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으로 피고 회사가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용합의서 및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G에게 입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회사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각 선행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983 및 2016가합2325)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반하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과실 및 불법행위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0. 1. 이 사건 차용합의서에 따라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 피고 B이 2013. 10. 8. 이 사건 차용합의서에 따라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G에게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350,000,000원 및 그중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3. 11. 14.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G에게 350,000,000원을 직접 입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차용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한다.

②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및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 B은 2014. 12. 27. 기업은행의 H 지점장에게,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0. 1. 피고 B과 이 사건 차용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대여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피고 B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법인은 피고 B과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이 2013. 10. 8. 이 사건 차용합의서에 따라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3, 34조). 이 사건 차용합의서는 피고 회사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갖기 전에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합의서 상의 권리의무를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용합의서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 청구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항변처럼 선행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6가합2325, 을나 제3, 4호증)의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3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차용합의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봉조, 판사 권 겸, 판사 조수연